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전략과 추진과제연구

2009. 6.2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진욱 부연구위원

CONTENTS*

Ⅰ 위원의 역할 및 성격

Ⅱ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Ⅲ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전략(안)

Ⅳ 위원회 중점추진과제 선정

PART 1

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1. 위원회의 성격

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법정위원회

16개 부처 장관·처장 및 13인의 건축·도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의 품격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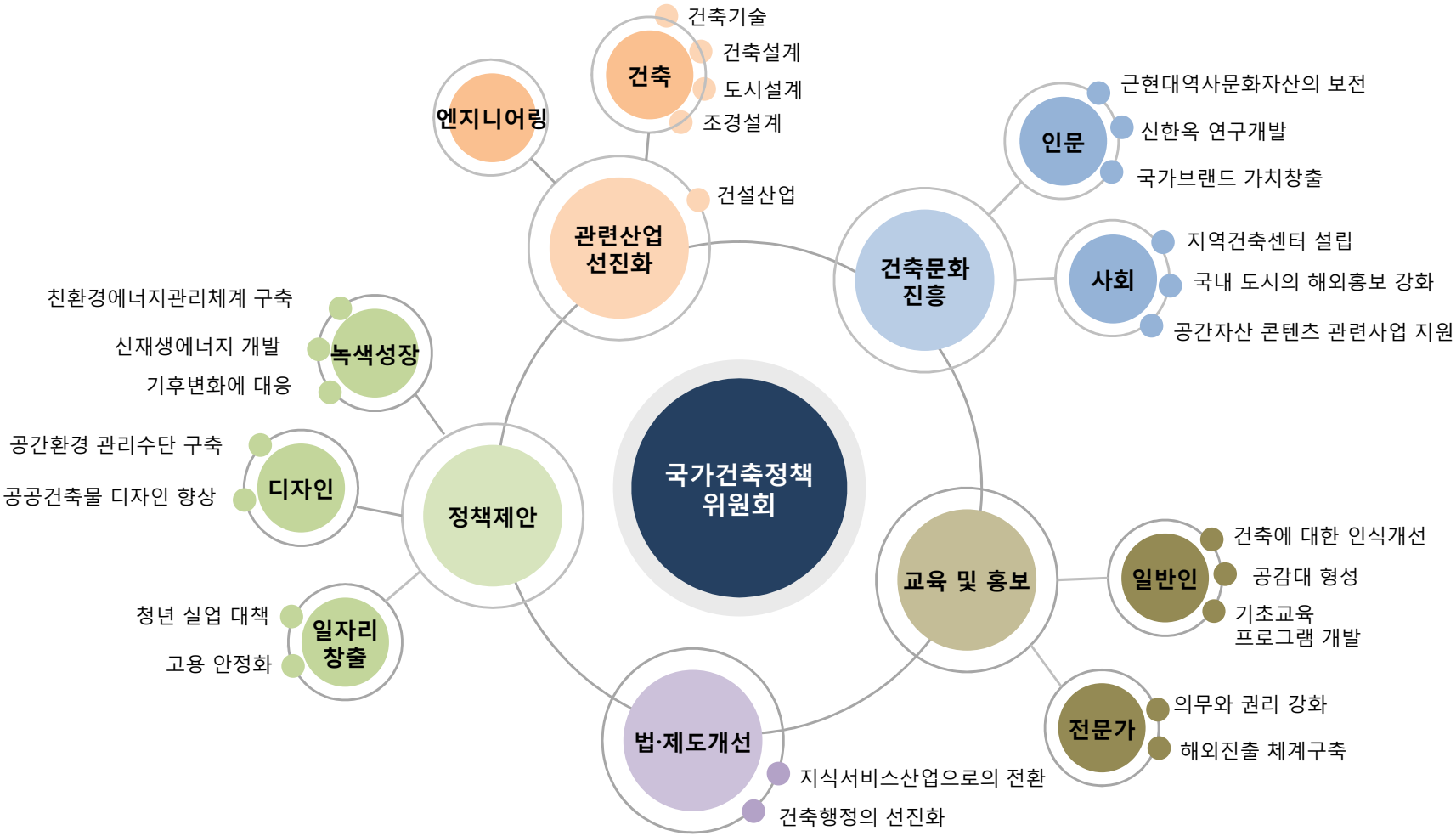

2. 위원회의 역할

주요 건축·도시 관련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건축정책기본계획(건축기본법 제10조) :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건축분야 중요한 정책 심의 및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건축기본법 제21조) :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관한 심의 · 조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건축기본법 제22조)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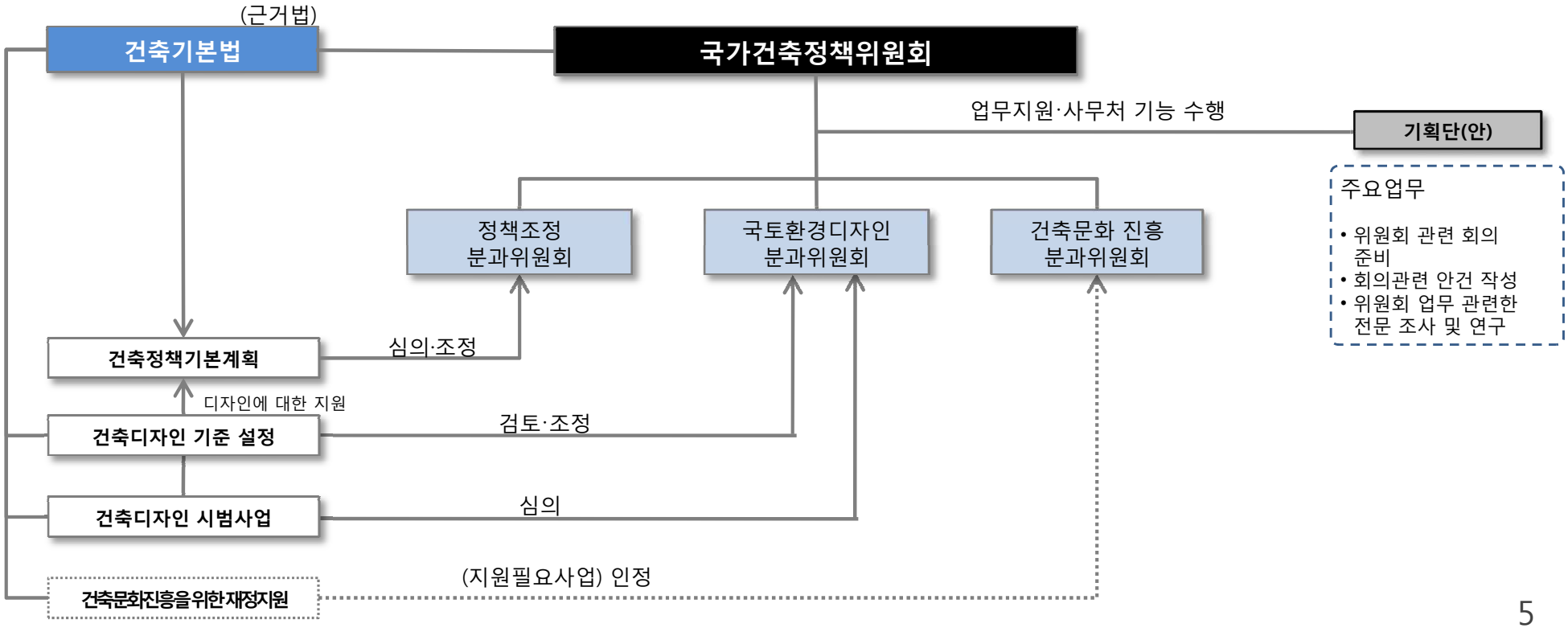

새로운 국가건축 전략과제의 기획·지원

- 뉴하우징 운동,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등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 수립 및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국가상징거리' 광화문권역 조감도



※'네덜란드, 큐빅하우스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건축·도시관련 정책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건축교육 및 홍보 기획·지원

- 건축문화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 방향 제시



※ 핀란드의 건축교육



※'나주읍성 동점문(복원)의 모습

PART 2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1. 현 정부의 정책기조

환경 및 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두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으로서 '녹색성장' 대두

- 녹색성장발전계획과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주요 국정과제로 녹색뉴딜사업을 진행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환경·산업·생활 등 추진





품격있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디자인 향상’** 추구

디자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국가의 산업경쟁력 지표로서 디자인 인식이 증대

- 서울 도시브랜드 세계 44위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

- 서울 디자인 올림픽, 공공디자인 엑스포
- 2010세계 디자인수도 서울 등





경제위기 해소, 녹색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2008년 하반기 미국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 빠르게 파급되어 경제위기 및 고용위기 초래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움





녹색기술산업과 디자인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경제부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환경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
- **2009.3.20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 개정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건축산업을 명시함

신성장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지식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2. 녹색성장과 디자인 관련 위원회 현황

녹색성장 관련 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제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신성장동력기획단	녹색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전반의 기본방향 및 전략 기획

디자인 관련 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 및 디자인 전반의 심의·조정을 담당
+	
지자체 및 자치구 (도시공공)디자인 위원회	해당 지자체 및 자치구의 도시디자인 및 추진에 관한 심의 담당

3. 위원회의 정책방향 설정

건축·도시분야의 새로운 정책기조

"신규공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공간의 집약적(Compact)인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도시공간 조성"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취임사('08.2.29),『저탄소 녹색 국토·도시 조성 및 녹색산업 육성방안('08.11, 국토해양부)』을 바탕으로 설정**

3. 위원회의 정책방향 설정

정책방향에 초점을 둔 수준높은 도시환경 조성

- 공공건축 및 공원, 가로 등의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과 도시환경 향상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축·도시 관련 산업육성

- 신성장동력으로서 건축도시분야 디자인산업 구조개편 및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건축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한 국가브랜드 창출

- 기존 건축도시 재창조를 통해 장소성 및 정체성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브랜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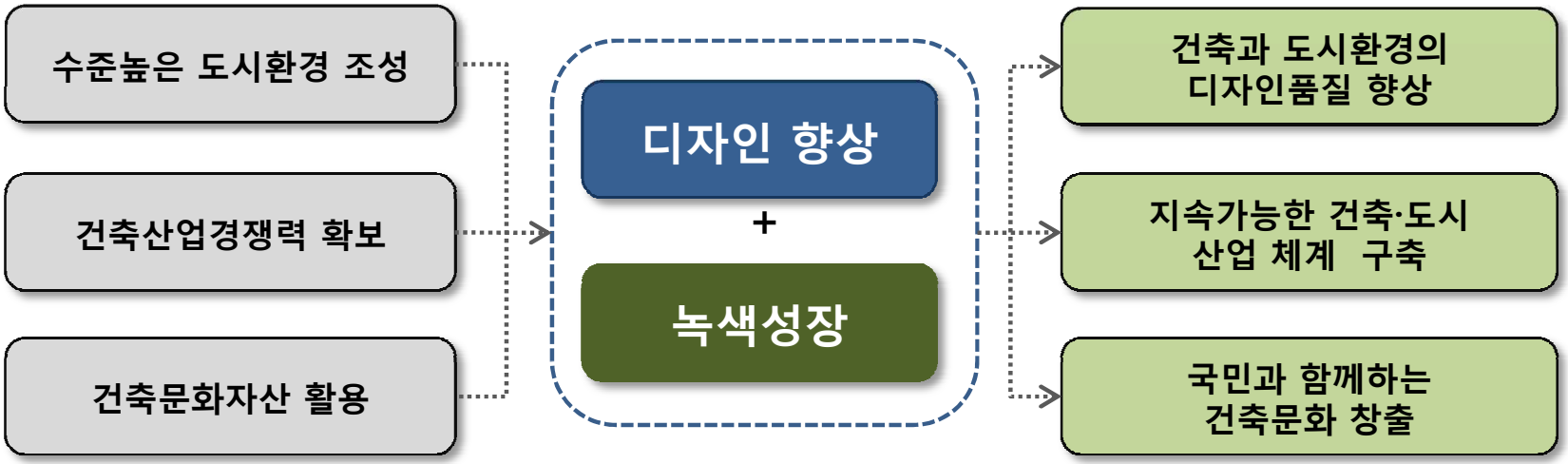

4. 위원회의 비전 및 목표(안)

위원회의 비전목표 (안)

- **위원회의 비전목표(안)은「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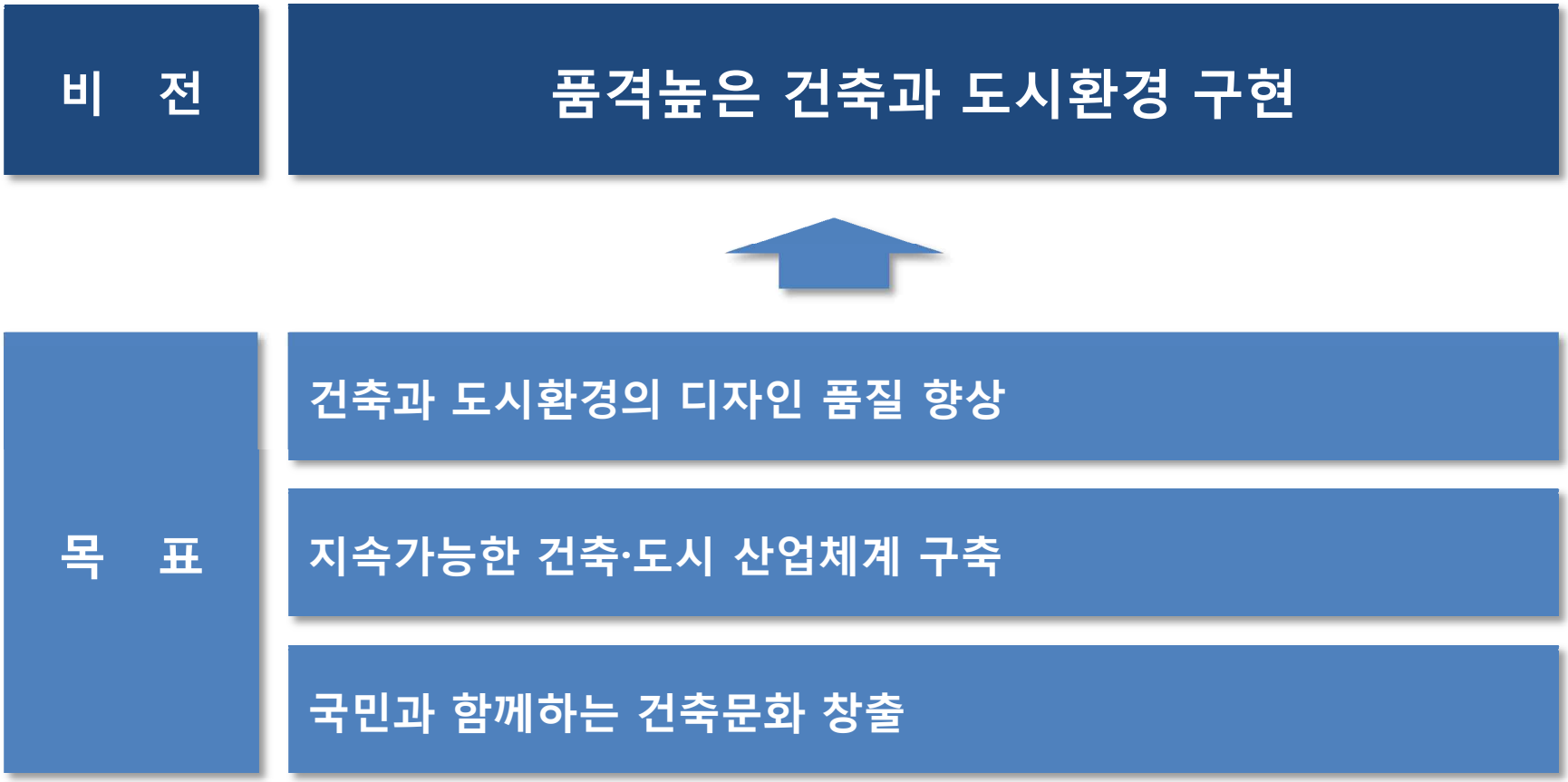

PART 3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전략(안)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도시분야 위원회로서 **‘내실있고 전문화된 위원회’** 운영 지향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 황	**정부위원 (당연직) 16명**, **민간위원(위촉직) 13명**으로 구성
문 제 점	**전 부처 장관이 포함되어** 위원소집이나 의결 등 **위원회 운영 비효율성 우려** * 타 위원회 정부위원 현황 : 미래위 2인, 국경위 3인, 지역위 9인
개선 방안	건축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연직 위원으로 축소 및 민간위원 확대검토** (국토부, 문화부, 농식품부,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지경부 등)

추진 방안 :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검토

2) 분과위원회

현 황	정책조정분과, 국토환경디자인분과, 건축문화진흥분과에 **각각 7~13명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분과위에 참여가능
문 제 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에 당연직 위원이 미 참여**하고 있으며, 분과위의 독자적 업무권한이 없음
개선 방안	**정부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유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전결사항 규정** 검토

추진 방안 : 건축기본법 시행령 및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검토

3) 기 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현 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 6항」에 의해 **자문단 설치·운영 가능(현재 미설치)** 위원회의 주요 추진업무를 바탕으로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T/F 설치**
문 제 점	자문단은 **과제별로 최대15명**을 위촉·활용가능하나 아직 **활용 실적 부재** 위원으로 구성된 **T/F의 설치근거 부재**
개선 방안	**주요 추진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개발 등에 활용** (뉴하우징, 발주제도 개선, 공공건축 개선, 건축·도시 저탄소 대책, 한옥, 공공디자인개선 등)

추진 방안 : 자문단 구성 추진

실무조정협의회 구성

현 황	범부처 성격의 과제 진행시 **부처간 협의를 위한 조직 및 설치근거 부재**
문 제 점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의 **협의를 위한 창구 부재**
개선 방안	본회의 상정 이전에 실질적 안건 검토 및 의견조율이 가능한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조직체 구성** 검토

※ 녹색성장위원회의「기획조정협의회」는 업무의 기획 및 관계부처 간 이견조율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기획단 단장으로 구성됨. 회의는 단장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주재함

추진 방안 :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련 조항 신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현 황	학·협회, 연구기관, 주·토공 등 유관기관과의 **종합적인 협력체계 부재**
문 제 점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이 없어** 위원회의 관련 자문, 홍보·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협의 및 협조 곤란**
개선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위원회와의 **소통채널 구축,** 위원회 정책의 **공감대 형성 및 현장 확산, 정기세미나 개최** 등 추진

추진 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운영세칙, 기획단 운영규정 등에 관련 조항 신설

위원회 조직체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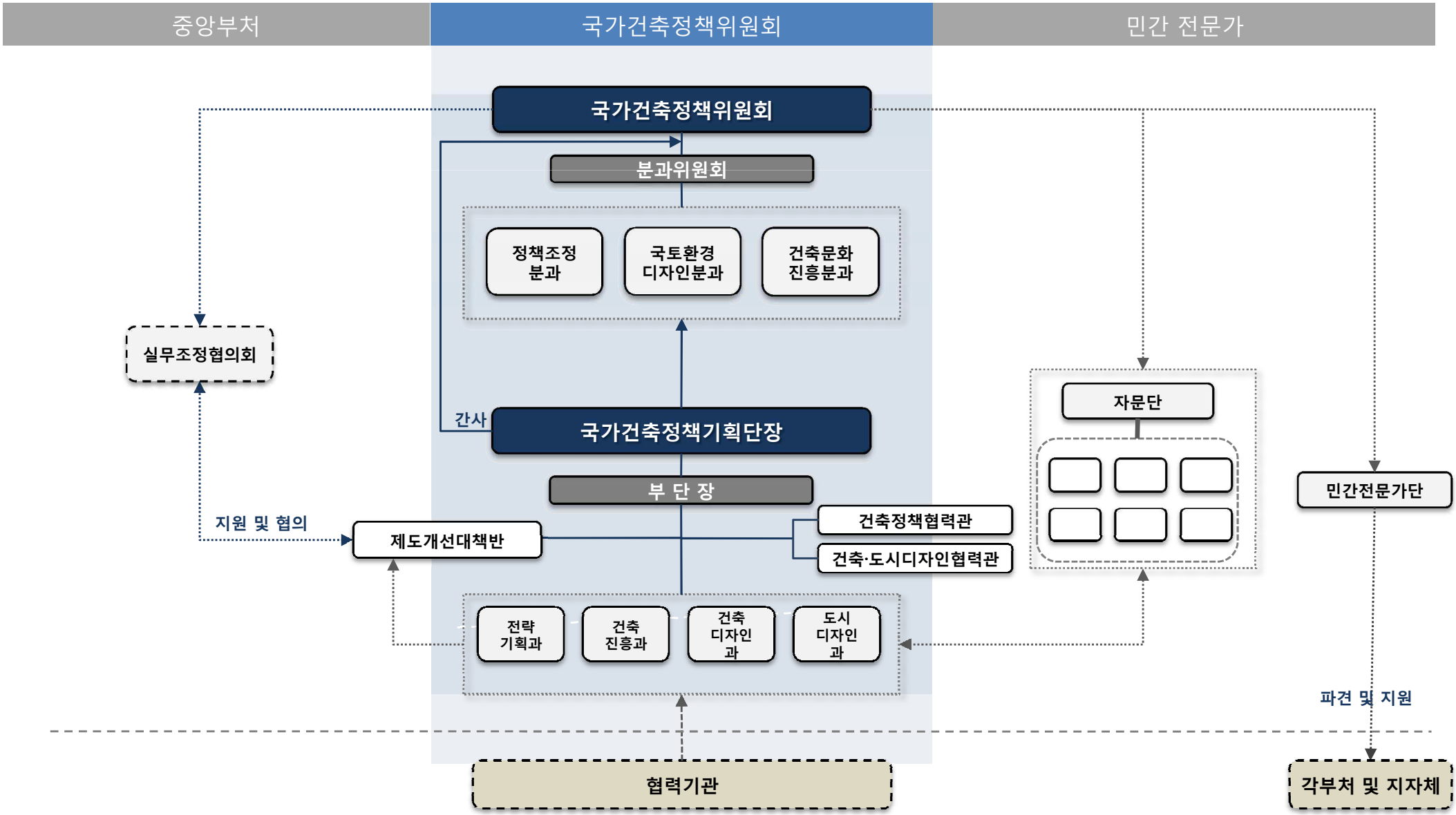
중앙부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 전문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 디자인분과
건축문화 진흥분과
실무조정협의회
간사
국가건축정책기획단장
부 단 장
지원 및 협의
제도개선대책반
건축정책협력관
건축·도시디자인협력관
자문단
민간전문가단
전략 기획과
건축 진흥과
건축 디자인 과
도시 디자인 과
파견 및 지원
협력기관
각부처 및 지자체

2. 국정과제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현 황	범부처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국책사업 및 지자체 대형 건축·도시사업**에 대한 **위원회 관여 필요**
문 제 점	16개 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국토부 관련사업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타 부처 사업에도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부재**
개선 방안	각 부처에서 추진·계획 중인 **건축·도시사업 현황 파악** **위원회 지원 방안** 마련 (예시)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계획수립 비용 일부 지원 - 민간전문가 추천을 통해 디자인자문, 사업총괄·조정 등의 역할 수행 -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위원회가 디자인 리뷰 및 자문 수행 체계 구축

3. 위원회 홍보방안

위원회 홍보의 목적

-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 등에 위원회 성격과 업무범위를 적극 홍보하여 위원회의 영역 확립
- 전 국민의 건축·도시관련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위원회 위상 정립

위원회 홍보 추진방안 (예시)

- 위원회 주최 '건축·도시문화세미나' 개최
- 다큐멘터리 ·특강(TV), 컬럼·기획(신문)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건축·도시 컨텐츠 홍보
- 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축·도시 관련 교육 및 특강 추진
- 아름다운 건축물 100선 등 건축문화이벤트 개최

4. 위원회의 업무추진 체계

1) 정책기획

정책기획 목적 · 대상 및 추진절차

- 위원회 차원의 정책제안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기획·추진
-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과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시급한 현안과제」, 「제도정비」, 「국가차원의 시범사업」등을 필요로 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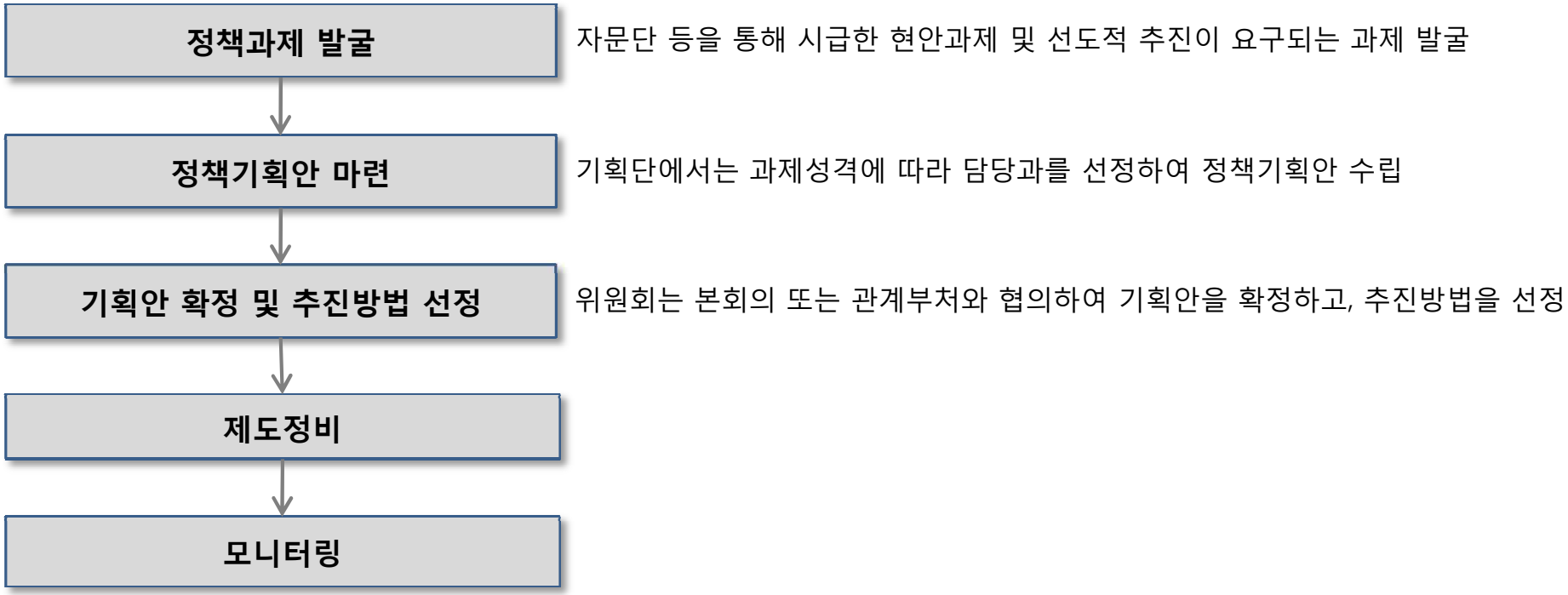

* 과제 성격에 따라 필요시 시범사업 추진

2) 제도개선

제도개선 목적 · 대상 및 추진절차

-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정기적으로 건의를 받아 상시 제도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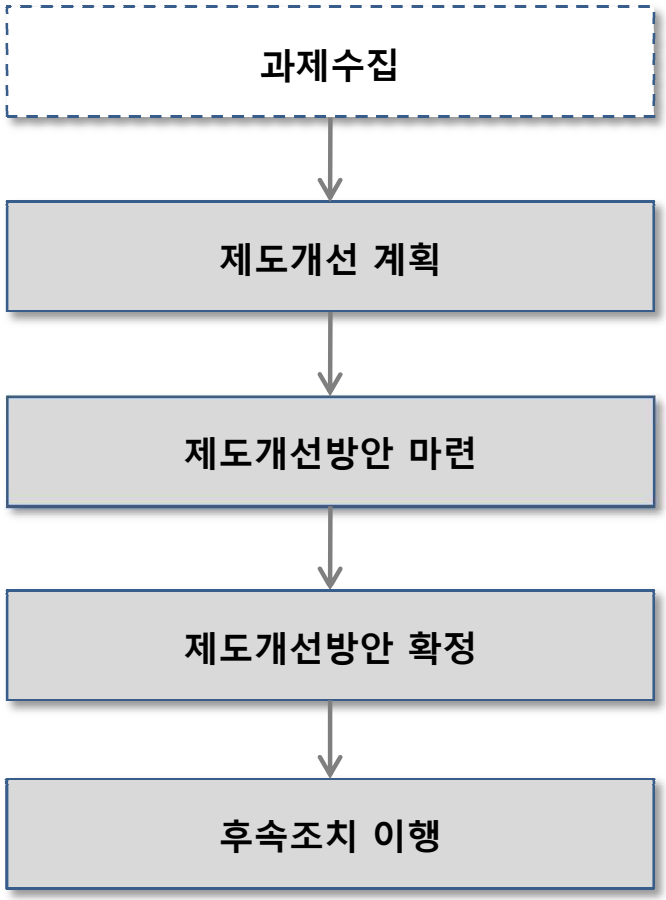

추진과제 선정 > 추진과제 성격 검토> 월별 제도개선계획 수정

실태조사 > 대안마련 > 전문가 검토 >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실무급 협의 > 과장·국장급 협의 > 위원회 본회의 상정 > 개선방안 확정

각 부처 통보 > 소관부처 세부이행 계획 수립 > 추진현황 관리

3) 위원회 자체사업

위원회 자체사업 목적 · 대상 및 추진절차

-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적 파급효과가 높으며 교육·홍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위원회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위원회 자체 예산 및 인력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

  (예시) : 아름다운 건축물 100선, 건축관련 포상, 건축도시관련 통계 연보발간, 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위원회 자체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는 사업성격 및 유형에 따라 case by case 별도의 절차 마련 필요

4) 국책사업의 지원 및 조정

국책사업 지원 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도시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과제 참여 방안 검토

국책사업 지원·조정 절차 (국가상징거리 예시)

- 사전기획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수행 절차별 자문 수행

5) 건축정책관련 심의 부문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선정」심의 대상 및 추진절차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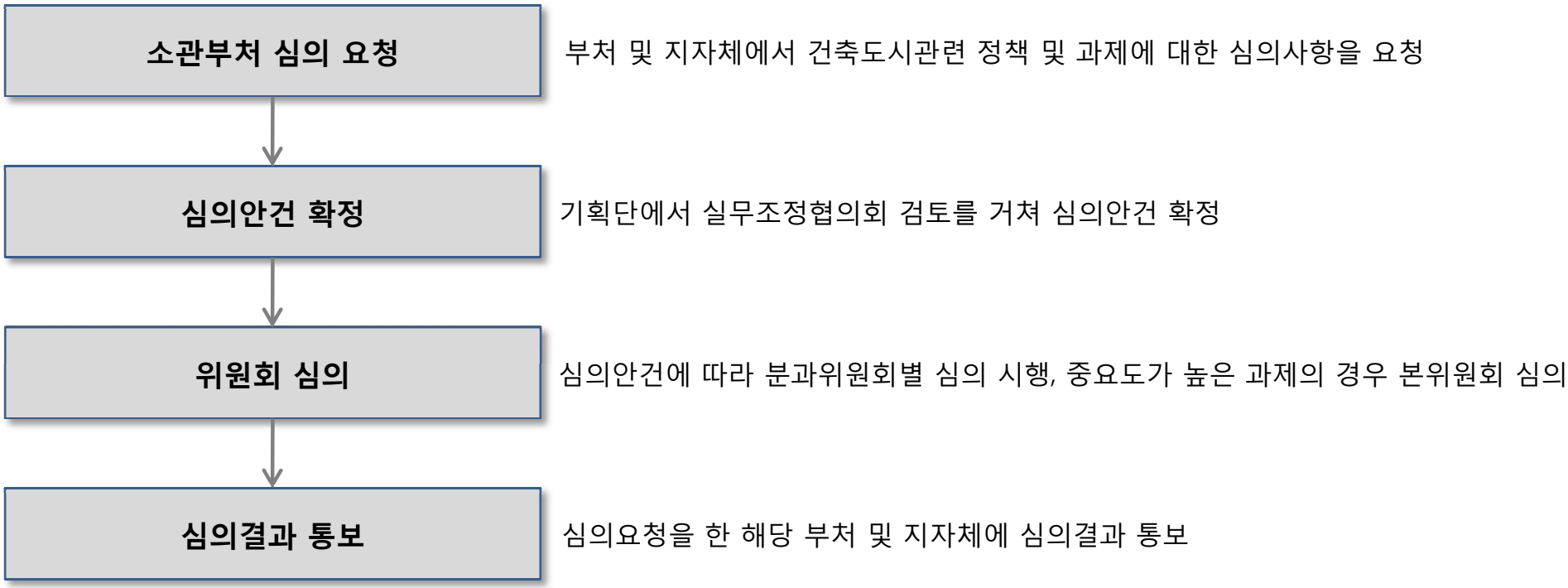

5. 위원회의 성과관리 방안

성과관리 필요성의 목적

- 추진과제별 성과관리와 이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 범부처간 전략 및 추진과제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과제 성과관리체계

- 과제별 수행주체의 자체평가와 기획단의 종합평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간 성과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 건축정책기본계획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추진

PART 5

위원회 중점추진과제 선정(안)

추진과제 발굴과정 및 선정기준

추진과제 발굴절차

- 제안주체에 따라 '중앙부처', '지역건축정책위원회를 포함한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학회 및 협회', 제안요청 과제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위원회 자체발굴 과제

중점추진과제 선정기준

- 1단계 : 과제의 중요도에 따른 선정기준

  ※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공공건축 개선과제', '일자리 창출·녹색성장 기여도 고려', '규제개혁을 통한 합리적 행정체계 기여도 고려', '지자체 중심의 프로젝트 베이스 과제'

- 2단계 : 위원회추진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따른 선정기준

  ※ 위원회의 추진가능성 고려', '범부처간의 의견조율 필요성 여부',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기획제안 필요성', '시범사업 중 위원회의 총괄·기획 필요성 고려'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 총괄표

정 책 목 표	추 진 방 향	실 천 과 제
건축과 도시환경의 공공성 구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2. 주거환경정비 방식의 다양화
		3. 공공주택의 디자인 강화
		4. 지역건축지원센터 구축
	건축과 국토환경 디자인 연계 강화	5.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디자인 촉진
		6. 수변공간과 주변지역 간 통합디자인 체계 구축
		7.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농어촌지역 경관관리 방안 마련
	공공성 구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및 정책수단 확보	8. 공공건축 및 시설물의 설계과정 평가수단 개발
		9. 각종 심의 및 평가제도 개선
		10.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공공건축 및 시설의 설계과정 쇄신	11. 공공건축 설계기획과정 개선
		12. 도시기반시설 디자인 쇄신
		13. 건축.도시 통합설계체계 구축
		14. 지방정부의 건축.도시 설계업무체계 개선
건축.도시 분야 경쟁력 강화	녹색 건축.도시 정책 확립	15. 탄소저감형 녹색 도시 기반구축
		16. 그린홈 건설 및 개·보수 지원
		17.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건축과 도시개발 기술의 첨단화	18. 건축.도시 분야 연구기반 강화
		19. 녹색.정보기술 융합 건축.도시개발 기술 확립
		20. BIM(빌딩정보모델링) 관련기술 개발
		21. 건축재료·부품 DB 구축 및 공유시스템 개발
	설계산업의 선진화	22. 설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3. 설계 관련 업무기준의 선진화
		24. 건축관련기준의 합리적 개선
		25.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
		26. 건축.도시 관련산업 통계지표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기반 확충	지역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	27. 건축문화자산의 발굴/보전/활용 관련제도 개선
		28. 한옥의 보전 및 개발
		29. 장소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문화사업 지원
	건축문화 창조역량 강화	30. 건축문화 진흥사업 지원
		31. 건축과 도시개발 분야 해외진출 지원
		32. 건축가 육성 및 지원 사업
		33. 건축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34. 건축기록물 축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위원회 3대 부문 25개 추진과제(안) 총괄표

목표	추 진 과 제	정책기획	제도개선	위원회 자체사업	국책사업 지원·조정
건축과 도시환경의 디자인 품질 향상	1. 공공건축 설계기획과정 개선	○	○		
	2. 지자체의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	○		
	3. 디자인품질 평가시스템의 도입·운영	○	○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			
	5. 공공주택의 디자인 강화	○			
	6. 지역건축지원센터 구축	○			
	7. 건축·도시관련 법제도간의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		○		
	8. 국토환경관련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9. 수변공간과 주변지역 간 통합디자인 체계 구축				○
	10. 대규모 국책사업 디자인 지원_국가상징거리 조성				○
	11. 지역별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거리 조성	○			○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산업체계 구축	12. 설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13. 건축·도시 관련산업 통계지표 구축			○	
	14.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15.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기반 구축	○			
	16.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			
	17. 녹색 건축·도시 개발 기술 확립	○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창출	18. 건축관련 포상제도의 정비·확충			○	
	19. 건축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 건축·도시관련 포럼 운영			○	
	21.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	○	○		
	22. 신진건축가 육성 및 지원사업	○	○		
	23. 건축문화 이벤트 개최_아름다운 건축물 100선			○	
	24. 한옥의 보전 및 개발	○			
	25. 건축기록물 축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감 사 합 니 다